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○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

- 영 제53조의6제1항 → 영 제53조의5제1항(안 제4조제1항)

- 영 제53조의6제2항제2호 →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(안 제6조제3항)

- 영 제53조의5제1항 → 영 제53조의2제1항(안 제7조제3항)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관하여 필요한 →관한, 한하여 → 한정하여, 보궐위원 → 새로 위촉된 위원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